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 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 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호 개정)
-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 략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감리원:"을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중첩도, 감점"을 "업무중첩도"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소방 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50 [30] (5) (10) (15) [20] (5) (5) (10)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2) 실적건수	15 [10] [5]	○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점 수</th> </tr> <tr> <td>100% 이상</td> <td>10</td> </tr> <tr> <td>80% 이상 100% 미만</td> <td>9</td> </tr> <tr> <td>60% 이상 80% 미만</td> <td>8</td> </tr> <tr> <td>40% 이상 60% 미만</td> <td>7</td> </tr> <tr> <td>40% 미만</td> <td>6</td> </tr> </table>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h>실적건수</th> <th>점 수</th> </tr> <tr> <td>3</td> <td>5</td> </tr> <tr> <td>2</td> <td>4</td> </tr> <tr> <td>1</td> <td>3</td> </tr> <tr> <td>0</td> <td>2</td> </tr> </table>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다.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10 [7]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4)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소방 기술자	(3)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설도	[3]													
	가)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table border="1"><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tr><td>점 수</td><td>1</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table border="1"><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tr><td>점 수</td><td>2</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5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table border="1"><tr><td>구 분</td><td>5년 이하</td><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3% 이상</td><td>3.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 2.0% 이상</td><td>2.0% 미만 1.5% 이상</td><td>1.5% 미만</td></tr><tr><td>점 수</td><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3) 교육 실적	[3]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마. 업무 중 첩도	1) 책임기술자	10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예시>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2) 참여기술자	[4]													

2. 삭 제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 마. 설계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7. 삭 제

8.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의 경 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50 [30]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12)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tr><td>점 수</td><td>12</td><td>11</td><td>10</td><td>9</td><td>8</td></tr></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3) 참여분야 경력	(12)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등 급</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d></tr><tr><td rowspan="3">100억원 이상</td><td>특급 (소방 기술사)</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tr><td>특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tr><td>고급</td><td>8 이상</td><td>8 미만 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td></tr><tr><td>100억원</td><td>특급</td><td>5 이상</td><td>5 미만</td><td>4 미만</td><td>3 미만</td><td>2 미만</td></tr></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특급	5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2 미만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특급	5 이상	5 미만	4 미만	3 미만	2 미만																																	

미만 50억원 이상	(소방 기술사)		4 이상	3 이상	2 이상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illegible]

			<table><tr><td>구 분</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td></tr><tr><td>점 수</td><td>4.0</td><td>3.8</td><td>3.6</td><td>3.4</td></tr></table>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2) 해당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 우 적용 (1) 등급	50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특급 (소방기술사)</td><td>특급</td><td>고급</td><td>중급</td><td>초급</td></tr><tr><td>점 수</td><td>25</td><td>24</td><td>23</td><td>22</td><td>21</td></tr></table>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2) 소방분야 경력	(25)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tr><tr><td>2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tr><td>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tr><td>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tr><td>점 수</td><td>25</td><td>24</td><td>23</td><td>22</td><td>21</td></tr></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 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 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점 수</td></tr><tr><td>100% 이상</td><td>10</td></tr><tr><td>80% 이상 100% 미만</td><td>9</td></tr><tr><td>60% 이상 80% 미만</td><td>8</td></tr><tr><td>40% 이상 60% 미만</td><td>7</td></tr><tr><td>40% 미만</td><td>6</td></tr></table>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		10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table><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table><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0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table><tr><td>구 분</td><td>5년 이하</td><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3% 이상</td><td>3.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 2.0% 이상</td><td>2.0% 미만 1.5% 이상</td><td>1.5% 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7</td><td>3</td></tr></table>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2) 해당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table><tr><td>구 분</td><td>3개소 이하</td><td>4개소</td><td>5개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r></table>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table><tr><td>교체빈도 (%)</td><td>10% 미만</td><td>10% 이상 20% 미만</td><td>20% 이상 30% 미만</td><td>30% 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5	(3)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작업기법	(2)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 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심사항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text{평점} = 7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text{평점} = 5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text{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시·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시·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 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 \pm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별표 3] 삭제

[] 설계업 [] 감리업 현황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신청내용	재 정 실 태					
	회계연도/ 결산기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상 훈 내 역					
	년 월 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제 재 내 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용 역 수 행 현 황					
	구 분	용 역 명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용역비(천원)	발 주 자	비 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 현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	---

작성요령	
1. 신고인은 신고내용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의 ‘구분’ 란에는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실적은 ‘비고’ 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 수행현황의 ‘용역명’ 및 ‘용역비’ 란에는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또는 소방공사 감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란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상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3. 제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정합니다)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소방기술자,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 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진행중인용역)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확인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소속 소방기술자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	---

참고사항

-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배치현황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m ²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m ²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25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u>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u>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세부평가기준</u> ----- -----.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3. <u>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u> <u>별표 3</u>	제3조(평가기준) ----- ----- ----- -----.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u>소방기술자</u> : 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u> : - ----- ----- ----- -----

2. 소방감리원: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신 설>

제6조(부실별점의 부과 등) ① 국가등은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3의 부실별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실별점을 부과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실별점 총괄내역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별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별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등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별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별점을 정정할 수 있다.

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 ③ (생략)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

----- 관한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 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투자실적·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⑥ (생략)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 업무중첩도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

----- 2023년 7월 1일 ----

----- 6월 30일-----

-----.